

2025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안)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2025. 2.

한국장학재단
학생진로장학부

목 차

I. 사업 개요 및 지원 현황

- 1.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1
- 2. 지원 현황 2

II. 2024년도 주요 성과

- 1. 국가근로장학금 3
- 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4

III. 2025년도 주요 계획

- 1. 국가근로장학금 5
- 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7

IV. 세부 사업별 지원방안

- 1. 국가근로장학금 8
- 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0

V. 향후 계획 및 일정 11

참고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세부사업 비교표 12

국가근로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변경 사유																				
지원 예산	■ 사업비: 4,043억 원 ○ 교내장학금: <u>1,952억 원</u> ※ 대학 대응투자: 교내장학금의 20% 이상 ○ 교외장학금: <u>2,091억 원</u>	■ 사업비: 5,551억 원 ○ 교내장학금: <u>3,491억 원</u> ※ 대학 대응투자: 교내장학금의 20% 이상 ○ 교외장학금: <u>2,060억 원</u>	▷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지원 인원 및 시급단가 인상																				
시급 단가	■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장학금: 9,860원 ○ 교외장학금: 12,220원 ※ 단, '25. 1~2월분 시급은 '25년도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장학금: 10,030원 ○ 교외장학금: 12,430원 ※ 단, '26. 1~2월분 시급은 '26년도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장학생 지원기준	■ 우선선발 기준(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본인)	■ 우선선발 기준(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가족돌봄청년	▷ 학업 지속 지원																				
근로 시간	■ 최대 근로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1일 최대</th><th colspan="2">주당 최대</th><th rowspan="2">학기당 최대</th></tr> <tr> <th>학기 중</th><th>방학 중</th></tr> </thead> <tbody> <tr> <td>8시간</td><td>20시간</td><td>40시간</td><td><u>520시간</u></td></tr> </tbody> </table>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u>520시간</u>	■ 최대 근로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1일 최대</th><th colspan="2">주당 최대</th><th rowspan="2">학기당 최대</th></tr> <tr> <th>학기 중</th><th>방학 중</th></tr> </thead> <tbody> <tr> <td>8시간</td><td>20시간</td><td>40시간</td><td><u>640시간</u></td></tr> </tbody> </table>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u>640시간</u>	▷ 근로시간 확대로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u>520시간</u>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u>640시간</u>																				
예산 배정기준	■ 배분점수(100%) ○ 예산집행률: 40% ○ 저소득선발율: 35% ○ 교외근로비율: 10% ○ 교외근로기관 확대: 5% ○ 운영결과보고 준수: 5% ○ [추가] 대청교/다문화참여: 5%	■ 배분점수(100%) ○ 예산집행률: 40% ○ 저소득선발율: 35% ○ 교외근로비율: 10% ○ 교외근로기관 확대: 5% ○ 운영결과보고 준수: 5% ○ [변경] 교내근로지 확대: 5%	▷ 교내근로 예산 확대 고려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변경 사유
교외근로 의무비율	■ 교외근로 의무비율: <u>43%</u>	■ 교외근로 의무비율: <u>29%</u>	▷ 교내근로 예산 확대 고려
근로 운영	■ 근로장학생 배정 인원이 근로 기관의 <u>상시 근로자 수</u>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학업시간(시간표)으로 지정된 시간은 <u>예외 없이 근로 활동 불가</u>	■ 근로장학생 배정 인원이 근로 기관의 <u>상시 근로자 수</u>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해당 기준은 교외근로만 적용 ■ 학업시간(시간표)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수업시간은 근로활동 허용 ※ 근로활동 중 수강 불가	▷ 유연한 근로 활동 및 배정 지원
출근부 관리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수기 출근부는 <u>근로일자별</u> 장애 대학생의 서명 및 확인 필수 ■ 재단의 출근부 <u>예외 승인 권한 없음</u> ※ 근로기관 확인 후 대학 최종 확인을 거쳐 장학금 지급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수기 출근부는 (<u>삭제</u>) 장애 대학생의 서명 및 확인 필수 ■ 재단의 출근부 <u>예외 승인 권한 부여</u> ※ 학생 귀책 없는 사유 등으로 장학금 지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 수기출근부 양식 변경 반영(월별 서명) ▷ 장학생 귀책 없는 장학금 지연 지급 방지
부정근로 관리	■ 대학의 자체적인 부정근로 적발·처리 건은 대학 예산 삭감 검토 시 제외	■ 대학의 자체적인 부정근로 적발·처리 건은 대학 예산 삭감 검토 시 제외 ※ 재단의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이수한 대학에 한정하여 기준 적용	▷ 부정근로 예방 관련 대학 교육 강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변경 사유																			
지원 예산	■ 사업비: <u>475억 원</u>	■ 사업비: <u>550억 원</u>	▷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강화																			
시급 단가	■ 멘토링 시급 단가 ○ 시간당 <u>12,220원</u>	■ 멘토링 시급 단가 ○ 시간당 <u>12,430원</u>																				
목표 인원	■ 멘토 <u>12,030명</u>	■ 멘토 <u>13,700명</u>	▷ 사업 활성화																			
활동 시간	■ 최대 활동시간 <table border="1"> <tr> <th rowspan="2">1일 최대</th><th colspan="2">주당 최대</th><th rowspan="2">학기당 최대</th></tr> <tr> <th>학기 중</th><th>방학 중</th></tr> <tr> <td>8시간</td><td>20시간</td><td>40시간</td><td><u>520시간</u></td></tr> </table>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u>520시간</u>	■ 최대 활동시간 <table border="1"> <tr> <th rowspan="2">1일 최대</th><th colspan="2">주당 최대</th><th rowspan="2">학기당 최대</th></tr> <tr> <th>학기 중</th><th>방학 중</th></tr> <tr> <td>8시간</td><td>20시간</td><td>40시간</td><td><u>640시간</u></td></tr> </table> (학기 중 주당 최대 활동시간 예외)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u>520시간</u>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u>640시간</u>																			
예산 배정 기준	■ 대학 예산 배분점수(100%) ○ 운영실적: 85% ○ 멘토규모: 10% ○ 운영결과보고 준수: 5%	■ 대학 예산 배분점수(100%) ○ <u>[변경] 운영실적: 75%</u> ○ 멘토규모: 10% ○ 운영결과보고 준수: 5% ○ <u>[변경] 활동기관 확대실적 10%</u>	▷ 대학 사업 운영의 책무성 강화 및 참여 기관 확대																			
멘토링 활동	■ 학업시간(시간표)으로 지정된 시간은 <u>예외 없이 멘토링 활동 불가</u>	■ 학업시간(시간표)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수업시간은 멘토링 활동 허용 ※ 멘토링 활동 중 수강 불가	▷ 대학 사업 운영의 유연성 제공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변경 사유
멘토링 활동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수혜한 장학금과 봉사활동시간은 중복 인정 불가	멘토링 활동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며, 봉사활동시간 인정 관련 세부 기준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 자체 학사운영에 따름	▷대학 사업 운영의 유연성 제공
원거리 인센티브	원거리 인센티브 추가입력 시간은 일/주/학기당 활동시간 산정 시 포함	원거리 인센티브 추가입력 시간은 학기당 활동시간 산정시 포함	▷원거리 인센티브 지원 활성화

I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가근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대청교)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추진 경과

- '05년, 지방 전문대학 대상으로 근로장학사업 시범 운영
- '06년, 전국 전문대학 대상으로 근로장학사업 확대 운영
- '09년, 4년제 대학 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설(한국장학재단 소관)
- '10년,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통합
- '12년,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까지 확대
- '13년, '방학 중 교외근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14년,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 포털시스템' 신설·구축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도입·운영
- '15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 신설
- '17년,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신설
- '19년, 9개 유형 사업을 2개 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및 4개 유형(교내, 교외,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으로 재구조화
- '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한시 운영 및 '위치기반(GPS)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신규 도입·운영
- '24년, 지원 대상 기준을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로 확대 운영

□ 지원현황

- 최근 3년 간 47.7만 명의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약 1조 2,517억 원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표 1. 최근 3개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 분			'23	'24	'25	합계
합계(A=B+E)		지원금액	339,464	302,170	610,104	1,251,738
		지원인원	142,057	135,471	200,000	477,528
국가 근로 세부	국가근로(B=C+D)	지원금액	304,703	268,454	555,104	1,128,261
		지원인원	132,117	124,857	186,300	443,274
	교내근로(C)	지원금액	145,886	129,080	349,136	624,102
		지원인원	79,138	78,134	135,000	292,272
	교외근로(D)	지원금액	158,816	139,374	205,968	504,158
		지원인원	52,979	46,723	51,300	151,002
대청교 세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E)	지원금액	34,762	33,716	55,000	123,478
		지원인원	9,940	10,614	13,700	34,254

※ 2023년은 최종 실적 기준(사업기간: 매년 3월 ~ 차년도 2월)이며, 2024년은 12월 말 기준 실적

※ 2025년은 예산 기준

【표 2. 국가근로장학금 세부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근로내용	지원실적		예산
				'23	'24	'25
합 계				339,464	302,170	610,104
교내 근로	일반 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143,185	126,610	349,136
	봉사 유형	장애대학생 봉사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2,558	2,330	
		외국인유학생 봉사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143	140	
교외 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 운영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142,887	128,157	205,968
	취업 연계	취업연계 중점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전공 관련 근로기관의 업무 경험 제공	15,929	11,217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등)에게 학습지원 등 멘토링 활동	34,762	33,716	55,000

※ '23년은 최종 실적 기준(사업기간: 매년 3월 ~ 차년도 2월)이며, '24년은 12월 말 기준 실적

※ 2025년은 예산 기준

II

2024년도 주요성과

①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지원 자격) 더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가능 대상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로 확대

※ 지원 자격: (기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개선)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내

- (지원 규모)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555,104백만 원 확보로 전년 대비 150,817백만 원 증액 반영 및 지원 확대 기반 마련

□ 장학생 일 경험 지원을 위한 근로기관 발굴 확대

- 장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희망 근로기관 발굴 및 다양한 일 경험 지원을 위한 선호도 조사 실시 및 관련 평가지표 개선
 - 선호도 조사를 통한 학생 선호 기관 파악·발굴로 근로기관 발굴의 효과성 제고 및 장학생 일 경험 만족도 향상
 - 국가근로 취업연계유형 실적 평가 시, 전년 대비 근로기관 증가 실적을 배점 산출에 반영하여 대학의 신규 근로기관 발굴 독려

□ 사업 참여 주체별 점검·관리 강화로 운영의 투명성 도모

- 사업 운영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믿을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으로 근로장학생의 안전한 근로활동 지원하고 부정근로 발생 예방
 - (대학) 교내 근로지를 재단 직접 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민원 발생 사항 점검, 특별 신고 기간 운영으로 부정근로 관련 인지도 제고
 - (근로기관) 전체 근로기관 대상으로 한 기관 정보 최신화, 기관 재무 건전성(국세 등 체납 여부 확인) 검증·보완으로 근로환경 신뢰도 제고
 - (장학생) 근로활동 전 이해관계 회피 의무 관련 사전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고, 미준수 장학생 점검을 확대(반기→분기)하여 관리 강화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활동기관 확대를 통한 온라인 멘토링 사업 활성화

- 국정과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추진을 위한 활동기관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확대하여 멘토링 사업 활성화

* EBS와 협업하여 온라인 멘토링 추진('24년 12월 기준 수혜금액: 147백만 원)

□ 책임 기반 사업 운영 강화

- (예산 배정 기준 강화) 대학별 예산 배정을 위한 ‘배분 점수*’ 산출 시, 운영결과보고 기한 내 제출 여부 항목 신설

* 배분점수(100%) = 전년도 운영실적(85%) + 멘토규모(10%) + (신설)운영결과보고 제출기한 준수(5%)

- (사전교육 도입) 활동기관에서 대학생 멘토에게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등 자체 사전교육을 실시 가능토록 하고, 멘토링 활동시간으로 인정

□ 대학별 연간 (가)예산 통지 체계 마련

- 대학별 연간 예산이 확정 통지되는 정규 일정(매년 3월 말~4월 초)에 앞서, (가)예산을 2월 중 잠정 안내함으로써, 대학의 당해년도 사업 운영 예측 가능성 확대 및 예산 집행률 향상 도모

□ 업무처리기준의 명확화

-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구체화) 활동기관과 멘토 간 가족관계 시, 신고 및 대학의 상시관리를 명시
- (금지업무 기준 명시) 해외에서의 멘토링 및 단순노무(청소, 빨래) 등 금지업무를 명확히 명시

□ 장학생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

- 학기 중 활동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확정 시, 부정근로와 무관한 장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학기가 아닌 다음 학기부터 참여 제한



2025년도 주요 계획

①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

- (지원 인원) 더 많은 대학생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교내근로)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만 명 확대

※ 지원 인원: (교내) 75,000명 → **135,000명**, (교외) 65,000명

- (지원단가) 근로시간 당 교내·외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마련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지원단가: (교내) 9,860원 → **10,030원**, (교외) 12,220원 → **12,430원**

□ 근로장학생 우선선발 대상 확대

- 정부 지원사업 등을 고려,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위한 우선선발 대상 신규 발굴 및 개선

- (신규 발굴) 가족 구성원 간병 등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비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청년 전담 지원 사업 대상자

- (기존 개선) 기존 우선선발 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증빙 서류 등)을 법령 및 정부 사업 기준을 준용, 지원 대상자 확대

※ 2025년 업무처리기준 1-2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별첨 3-6 참조

□ 근로장학생 역량개발을 위한 양질의 교내근로지 확대

- 행정·사무보조 외 연구·교육보조 등 근로장학생 역량개발을 위한 양질의 교내근로지 발굴 기반 마련으로 근로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 (교외근로 의무비율) 대학이 관리·준수해야 할 총 근로시간 대비 교외 근로시간 비율을 하향(43% → 29%)하고, 교내근로 활성화 유도
- (예산 배정) 대학의 교내근로지 확대 노력*(신규 근로지 발굴 실적 등)을 예산 배분 기준에 반영하여, 연간 사업 예산 배정 시 우대
 - * 연구실 등 양질의 근로지 발굴 시,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협력 유공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 (장학생 배정) 양질의 교내 근로지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 하여 장학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원활한 운영 지원

※ 2025년 업무처리기준 III-1 예산 관리 > 예산 배정

II-2 근로기관 등록 및 배정 > 근로기관 배정 시 유의사항 참조

□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으로 장학생 만족도 제고

- 대학·장학생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근로활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업과 병행 가능한 근로활동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 추진
 - * 권역별 대학 간담회, 근로기관 선호도 조사 등
- (최대근로시간) 학기당 최대근로시간을 전년 대비 확대(520시간→640시간) 하여 장학생의 근로활동 가능 시간 확대 반영
- (온라인 수업) 대학의 학사계획 상 학업 시간이 기재되었으나,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은 학업 시간에 근로활동을 허용 하여 근로활동의 유연성 확보(근로활동 중 수강은 금지)

※ 2025년 업무처리기준 II-3 근로활동 진행 > 근로시간 참조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 및 시급 단가 인상

- (지원인원 확대) 대학생 취업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지원인원* 1,670명 확대

* ('24) 12,030명 → ('25) 13,700명

- (시급단가 인상) '25년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시급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 ('24) 12,220원 → ('25) 12,430원

□ 멘토링 기준변경에 따른 사업 활성화

- (학기당 최대활동시간 확대) 학기당 최대활동시간을 기존 520시간에서 640시간으로 확대하여 멘토링 활성화 도모
- (주당 최대활동시간 예외 대상 신설)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활동 가능 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640시간

* (1학기) '25. 3. ~ 8. / (2학기) '25. 9. ~ '26. 2.

- (봉사시간 인정) 멘토링 활동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 활성화 기대
- (원거리 인센티브 기준완화) 원거리 인센티브 입력 시, 일, 주 최대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하여 지원 활성화

IV

세부 사업별 지원방안

① 국가근로장학금

□ 예산 현황(사업비): 5,551억 원

- 교내 국가근로장학금(3,491억 원), 교외 국가근로장학금(2,060억 원)

【 2025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사업비	'24년	'25년	증감
소 계	404,287	555,104	(+) 150,817
교내 국가근로장학금	195,228	349,136	(+) 153,908
교외 국가근로장학금	209,059	205,968	(-) 3,091

- (대학별 예산 배분) '25년 총 사업예산 범위 내 대학별 예산 신청금액, 전년도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유형별 예산 배정

□ 지원 대상

- (대학) 국내 전체 대학 중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 신청하여 재단이 승인한 대학
-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

【 근로장학생 선발 요건 】

기본 요건			
성적	C ⁰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우선선발 요건			
경제적 수준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학생,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 지원내용

- (장학금 시급단가) 교내근로: 10,030원 / 교외근로: 12,430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근로: 시급의 20% 이상 / 교외근로: 대학 자율
- (근로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640시간

- ※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은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6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근로유형별 활동 내용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 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 장애대학생의 학업 및 이동 보조 • (외국인유학생 봉사)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 재단 운영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의 업무 경험 제공

□ 사업 운영 중점사항

- (교외근로 의무비율) 총 근로시간 대비 교외근로시간* 비율을 29% 이상으로 관리 필요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집행실적 포함
- (예산 배정 제한) '24년도 교외근로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25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배정 제한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예산현황(사업비): 550억 원

[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비	'24년	'25년	증감
대 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47,500	55,000	(+) 7,500

- (대학별 예산배분 기준) 전년도 집행률, 멘토 규모, 사업운영결과 보고 기한 준수 여부, 활동기관 확대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지원대상

- (대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재단이 승인한 대학
- (학생)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참여대학의 재학생

[기본 선발 요건]

구분	대 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성적	성적 C ⁰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경제적 수준	무관
기타사항	대학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 성적 기준 적용 완화(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승인이력 포함)

☐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단가) 12,430원
- (근로시간) 연간 최소 및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연간 최소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640시간	10시간

※ (학기 중 주당 최대 활동시간 예외)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에 한해 학기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V

향후 계획 및 일정

① 국가근로장학금

- ☐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대학 안내('25. 2월)
- ☐ 대학별 사업 신청 및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신청 및 (가)예산 배정(대학→재단, '25. 2월)
 - 대학별 '24년 운영결과 보고 및 '25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대학→재단, '25. 3월)
 - 대학별 연간 예산 배정 및 1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5. 4월 초)
 - 예산 조정에 따른 2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5. 9월)
 - 대학별 예산 과부족 수요에 따른 추가 예산 조정(재단→대학, '25. 10월~)
- ☐ 학생 신청
 - '25년도 1학기: (1차) '24. 11. 21.~12. 26., (2차) '24. 2. 4.~ 3. 18.
 - '25년도 2학기: (1차) '25. 5월 중, (2차) '25. 8월 중
- ☐ 대학별 사업 운영결과 보고
 - '25년도 1학기: '25. 9~10월 경
 - '25년 사업 운영결과 보고: '26. 3월 경 ※ 일정은 변동 가능함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대학 안내('25. 2월)
- ☐ 대학별 사업 신청 및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신청 및 (가)예산 배정(대학→재단, '25. 2월)
 - 대학별 '24년 운영결과 보고 및 '25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대학→재단, '25. 3월)
 - 대학별 연간 예산 배정 및 1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5. 4월 초)
 - 예산 조정에 따른 2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5. 9월)
 - 대학별 예산 과부족 수요에 따른 추가 예산 조정(재단→대학, '25. 10월~)
- ☐ 학생 신청
 - 2025년도 1학기('25. 2월~8월, 상시)
 - 2025년도 2학기('25. 8월~'26. 2월, 상시) ※ 일정은 변동 가능함

참고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세부사업 비교표

구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추진 근거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5조(국가의 책무)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5조(국가의 책무)
사업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사업 규모	(‘25년 예산) 555,104백만 원 (‘25년 지원인원) 186,300명	(‘25년 예산) 55,000백만 원 (‘25년 지원인원) 13,700명
지원 기간	1학기: ‘25.3.1. ~ ‘25.8.31. 2학기: ‘25.9.1. ~ ‘26.2.28.	연간: ‘25.3.1. ~ ‘26.2.28.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아래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성적) C^o수준(70점/100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아래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성적) C^o수준(70점/100점) 이상 (소득) 무관
지원 분야	- 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하는 모든 업무 - 단, 단순 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제외	- 장학생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한 학습지원 및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 단, 활동기관의 업무보조 및 단순노무 (청소, 빨래 등) 등의 활동은 불가
추진 체계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재단)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공고, 대학별 예산 배정 및 결산 (대학) 장학생 선발 및 배정, 장학금 지급, 운영 결과 보고	